
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?

1 질의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6항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균단가인지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지?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6항을 보면,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, “평가액”이란 각 단가에 면적 (수량) 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. 【2011.6.22. 토지정책과-2988】